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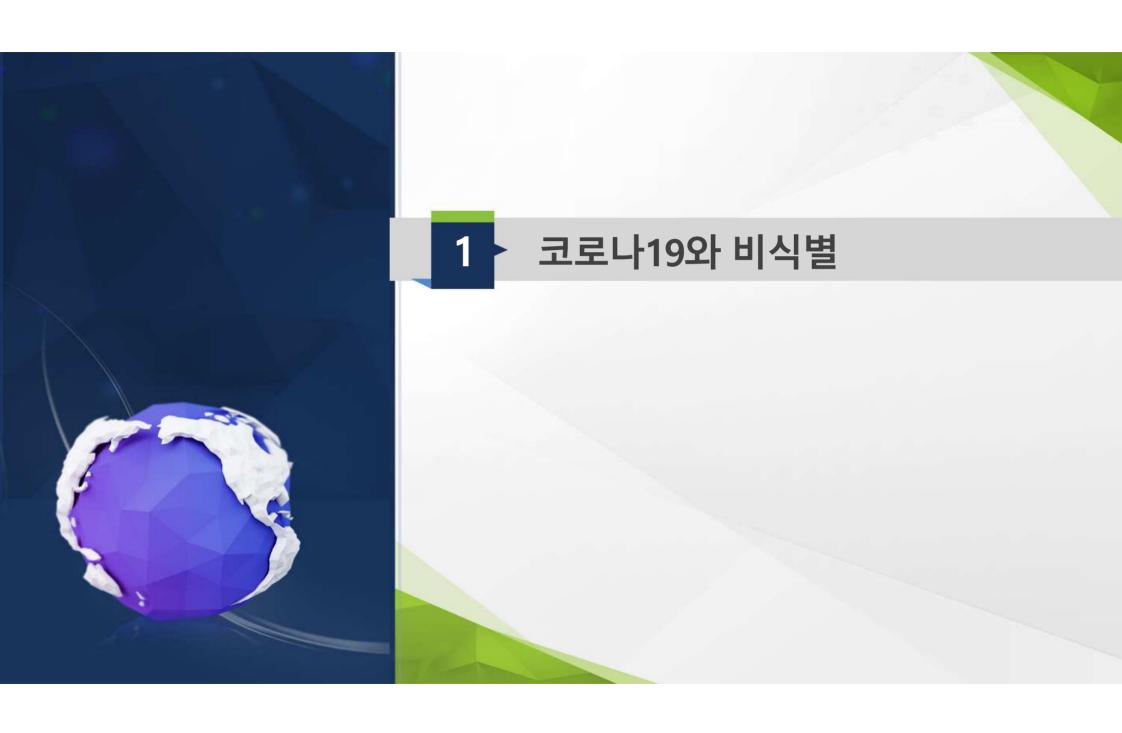


## **Contents**

- 1 코로나19와 비식별
- 2 비식별 개요
- 3 해외 비식별 정책 동향
- 4 국내 비식별 정책 동향
- 5 향후 과제







## 1. 코로나19와 비식별

### > 코로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사례 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구미 지역에서 확인된 첫 확진자였다.

구미시청 브리핑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정보(동선, 신상정보)로 남자친구가 신천지 교도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외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개인정보도 공개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다.

#### 사례 2

코로나19 확진자 B씨는 밀접 접촉자인 부인과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처제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진자 B씨와 처제의 사이가 "불류"이라는 억측에 시달렸다

#### 사례 3

코로나19 확진자 C씨는 특정 시간대에 노래방을 수차례 방문한 동선이 공개되어,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이외에도 모텔이나 술집 등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공개되면서 <u>확진자들이 2차 피해를 본다</u>는 지적이 이어졌다.



## 1. 코로나19와 비식별

>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일부



지난 3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간 장소와 시간 등일부 정보 공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 발표

### 인권 침해 사례



확진자의 사생활 노출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 등 2차 피해 우려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확진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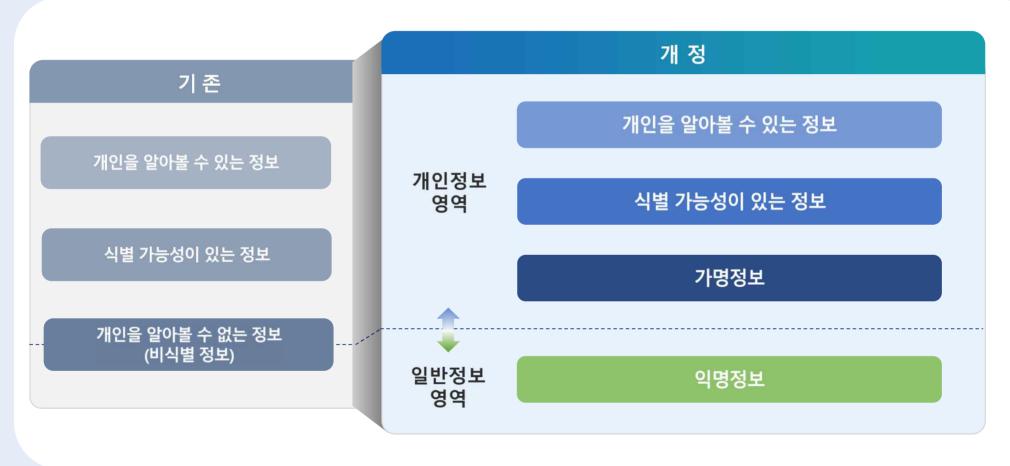
- ☑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 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고려
- 확진 환자가 거쳐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 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공개





# 2. 비식별 개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 2. 비식별 개요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7H	01
듔	Н
Ö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주소	직업	가족	예금평균잔액	대출액
홍길남	67.01.03	010-9999-3333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딸1	4,567,900원	50,984,234원

가명	
정보	
일부 정보로 식별 가능	5

자모디

이름생년월일핸드폰주소wd4e85d2z4qe1창원시 마산회원구삭제악호화범주화

직업가족예금평균잔액대출액국회의원배우자, 아들1, 딸14,567,900원50,984,234원

가명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 식별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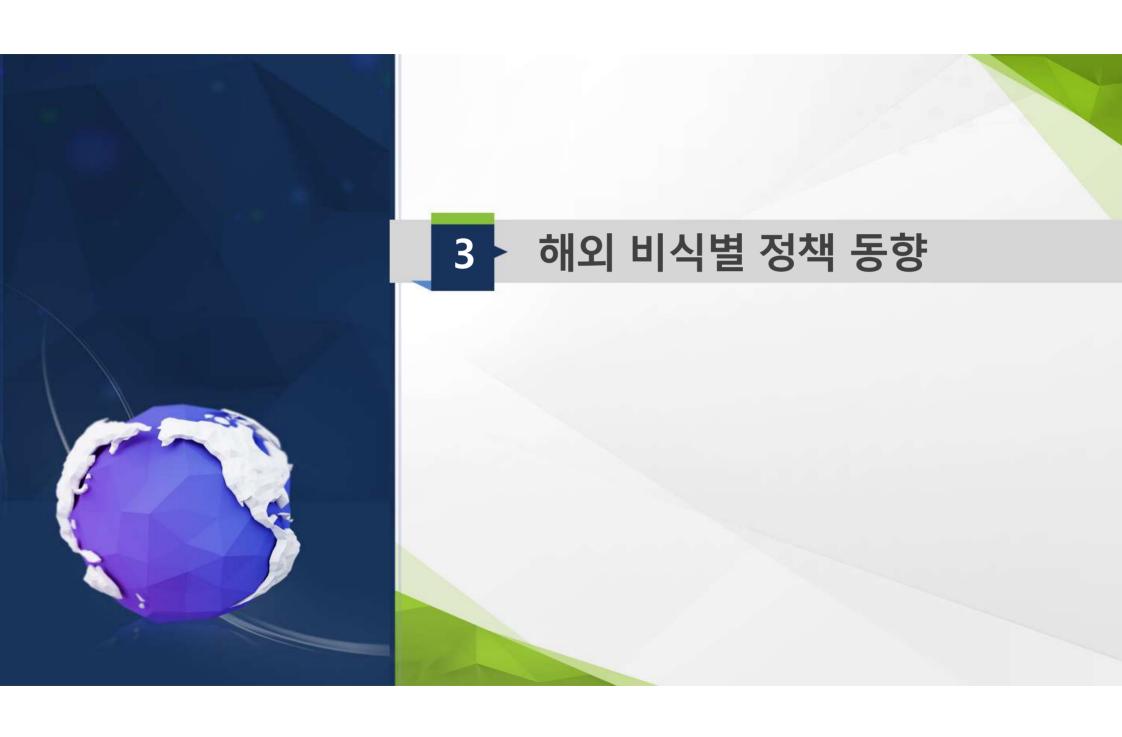
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주소	직업	가족	예금평균잔액	대출액
		wd4e85d2z4qe1	창원시 마산회원구		배우자, 아들1, 딸1	4,567,900원	50,984,234원
삭제	삭제	암호화	범주화	삭제			

개인식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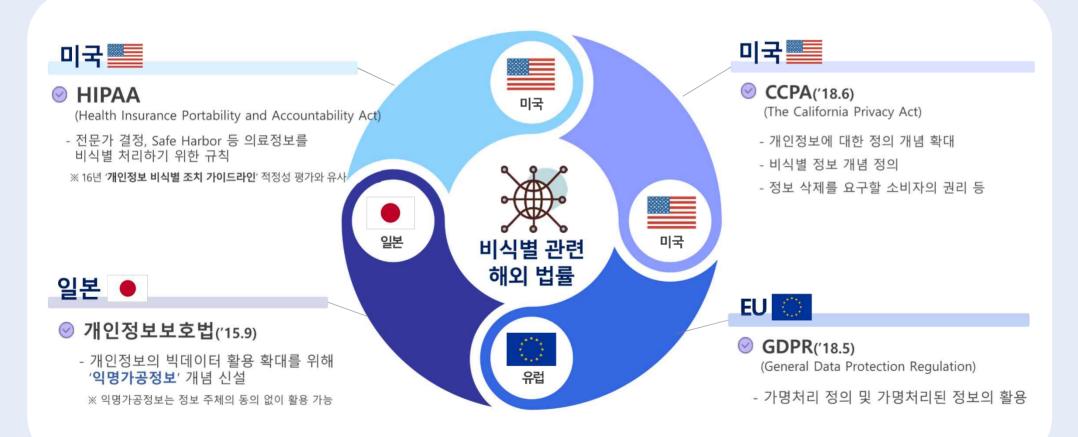
익명 정보 개인식별불가

생년월일 이름 핸드폰 주소 직업 가족 예금평균잔액 대출액 창원시 가족3 400~500만원 4천~5천만원 삭제 삭제 삭제 범주화 삭제 일반화 범주화 범주화



## 3. 해외 비식별 정책 동향

### 비식별 관련 해외 법률





## 3. 해외 비식별 정책 동향

> 비식별 관련 해외 가이드 및 국제표준



**NIST IR 8053** 

미국 NIST("15.10)

• 데이터와 정보주체 간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비식별 프로세스에 대한 용어 정리

The Anonymization Decision Making Framework 영국 UKAN(16.11)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처리하는데 활용 가능한 각종 기법과
 익명처리 및 데이터 공개 시 위험도 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

De-identification Guidelines For Structured Data 캐나다 IPCO (16.6)

- 구조적 형태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 안내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성 기반 비식별 처리 절차 안내

ISO 25237/20889

국제표준 ('17.1 / '18.11)

- (ISO 25237) 의료 데이터와 정보주체 간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절차 안내 가명정보의 재식별 방지를 위한 위험 레벨 정의
- (ISO 20889) 비식별 관련 용어 정의, 비식별 기술 분류, 비식별 모델, 적용 원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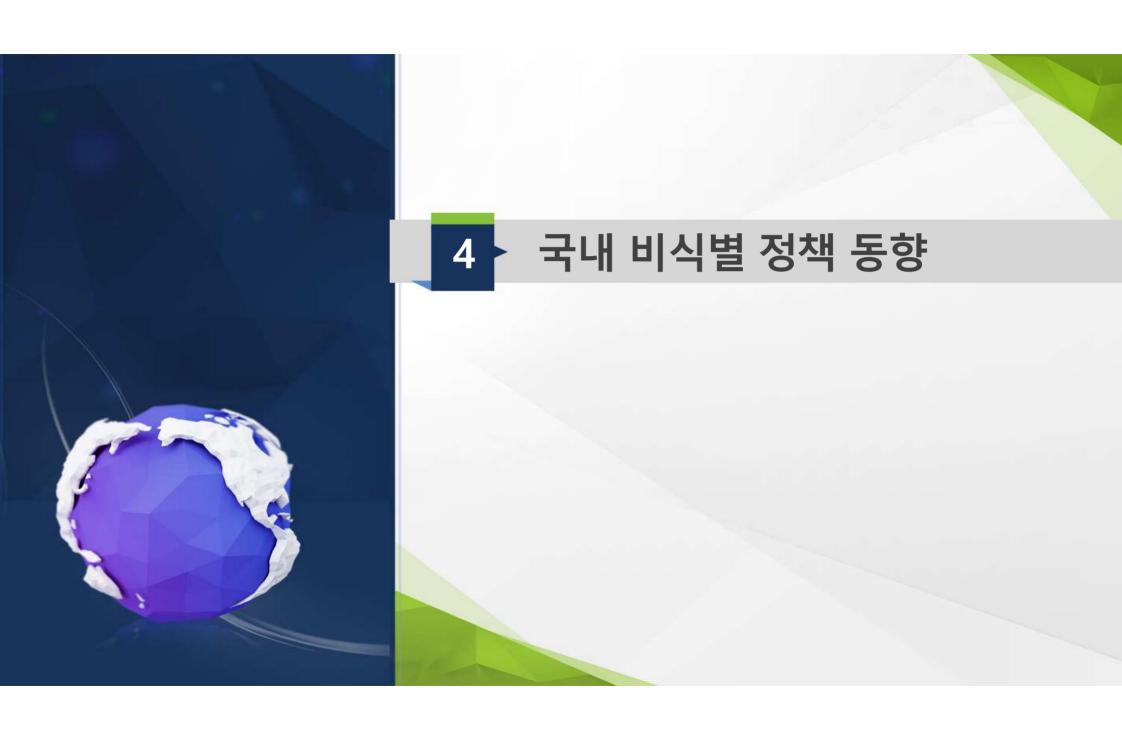


# 3. 해외 비식별 정책 동향

### 최근 비식별 관련 해외 동향

국가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 명	발간일 및 발행기관	주요 내용
	Code of Conduct for The Pseudonymization	2019년 11월 (GDD*) * 데이터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 GDPR 준수를 위한 가명처리 관련 기준 규정 (적용 범위, 가명처리 기법 및 적용방법, 가명처리 기준 및 평가, 재식별 가이드, 가명처리 사례 등 안내)
독일	Public Consultation Process Regarding Anonymization under the GDPR	<b>2020년 2월</b> (BfDI*) *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	<ul> <li>익명정보에 대한 기준 마련(데이터 내 싱글아웃 처리, 특정가능성, 추론가능성 등)</li> <li>익명정보를 사용할 경우 유용성과 재식별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필요</li> </ul>
% अ	Anonymisation of Data (Pseudonymisation) Policy and Procedure Ver.2	2020년 4월 (NHS*) * 영국 보건의료서비스	<ul> <li>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치료목적 이외에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가명처리) 방법 등을 기술</li> <li>조직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담당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 정의</li> </ul>
iapp German monitori of printing printingside 국제기구	<b>Deidentification 101:</b> A lawyer's guide to masking, encryption and everything in between	2020년 4월 (IAPP*) * 국제 프라이버시 전문가 협회	De-Identification에 대해 변호사가 알아야 할 안내서 발간     주로 마스킹, 암호화, 해싱 등 기술 가이드 제공
	<b>Deidentification 201:</b> A lawyer's guide to pseudonymization and anonymization	2020년 5월 (IAPP)	<ul> <li>De-Identification에 대해 변호사가 알아야 할 가명화 및 익명화 기법 설명</li> <li>가명처리 기법 및 익명처리 기법(HIPAA 전문가 결정 기준 등), 데이터 상황을 고려한 익명처리 기법 (k-익명성, 차분프라이버시 보호모델 등), 단순 데이터 처리 뿐만 아니라 컨텍스트 제어 고려 필요</li> </ul>
프랑스	L'anonymisation de données personnelles	<b>2020년 5월</b> (CNIL*)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ul> <li>다양한 <b>익명처리 기법 및 절차</b>, 가명·익명처리의 차이점</li> <li>익명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설명(<b>식별가능성, 상관관계, 추론</b> 등)</li> </ul>





> 국내 비식별 정책 경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 ① 개인정보 판단기준 보완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구체화
-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화 법제58조의2(익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 기 존

#### 제2조(정의) 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정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데이터의 이용 및 제공 범위 확대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수집목적 범위 내 관련된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 이용 제공 가능 제15조, 제17조 제15조 3항, 제17조 4항 당초 수집목적과 최초 수집 시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안전성 정해진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이용 가능 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일부 변경 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가능 정보주체로부터 추가 동의 획득 필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제2조 8호)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데이터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28조의3)

데이터 결합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부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기업 내부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며, 서로 다른 기업 간 데이터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1항)

※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하도록 해 안전성을 높임(2항)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가명정보의안전한 활용을위해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벌 부과
- 재식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벌 부과

#### 가명정보 안전조치 의무

(제28조의4)

- i 관련 기록 작성 · 보관
- ii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별도 분리** · 보관
-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재식별 금지 의무

(제28조의5)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불가
-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처리 중지, 회수,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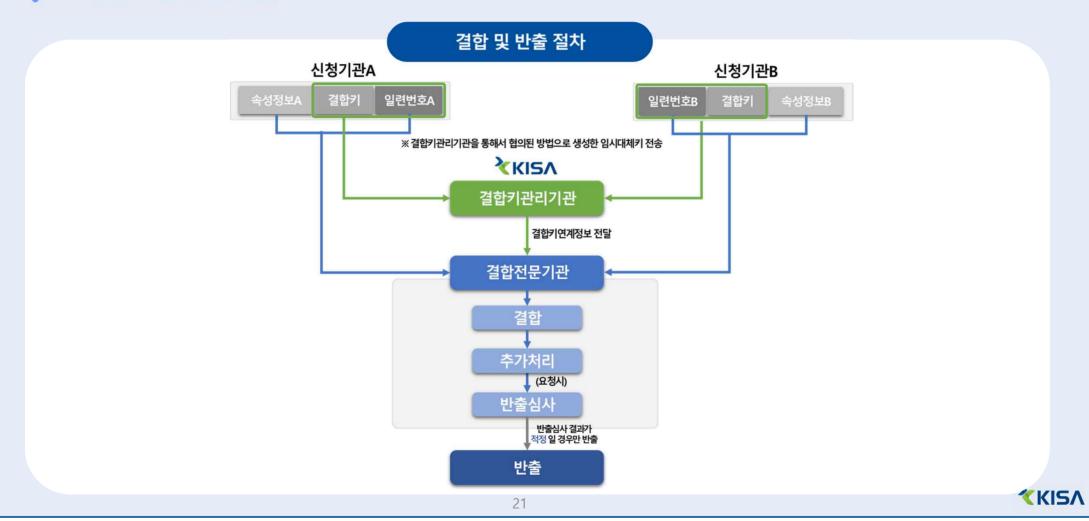
위반 시, 4억원 이하 또는 전체매출 3% 이하 과징금,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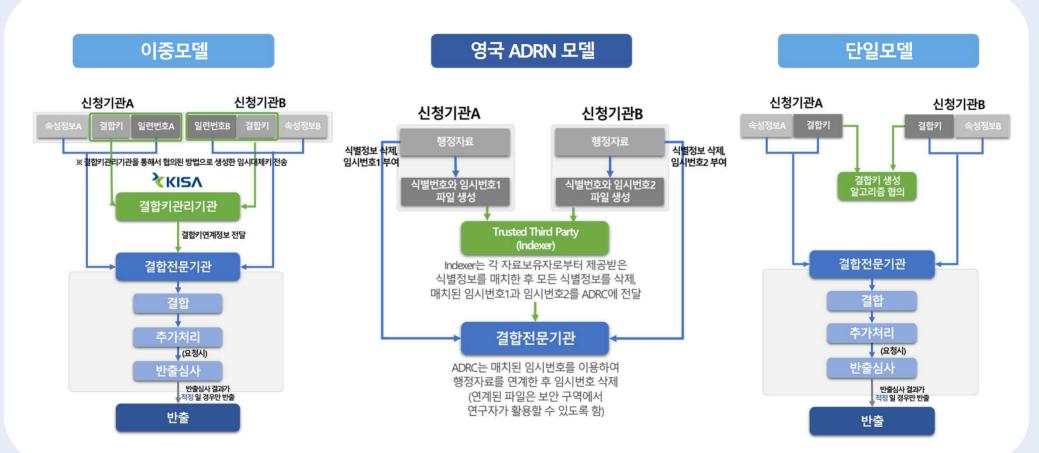
> 가명처리 절차

가명처리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고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적정 사전준비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사후관리 (목적의 적합성 및 사전계획 수립) (가명처리 수준정의 및 처리) 부적정 처리(제공) 환경 및 처리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가명처리 대상 및 처리 수준 정의를 위한 가명처리 목적 구체화 정보의 성격 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명처리 수행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처리 수준이 부족하거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추가처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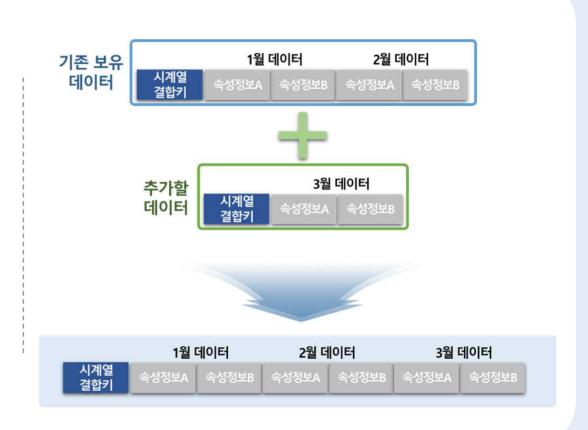


### 결합모델 비교



### 시계열 결합







### 반출승인 기준



- 결합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 설명**
- 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반출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 제한** 🕕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시행령 제29조의5)







다만,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 · 통제





### 5. 향후 과제

### 추가과제

전문기관·가명처리·반출정보 등에 대한 사후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결합

다양한 결합 유형에 대한 지원 강화

가명정보 법제도 개선과제 도출





국내외 가명 · 익명처리 관련 신규 기술 분석 및 개발

### 정책방향

데이터 안전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



개인정보처리자 자율 데이터 결합 및 활용 체계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모색



